

# 『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 : 김근아 의원 외 10명

## 2. 제안이유

- 최근 핵가족화, 고령화, 배우자 사별,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,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
-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2조, 제3조)
-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, 제6조)
-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, 제9조의5, 제34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조, 제4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핵가족화, 고령화 등의 사유로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주고자 함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규정(안 제2조, 제3조),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,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,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7조) 등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### ○ 검토결과

#### ▪ 본 조례안은

시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심리상담, 심리치료, 말벗 서비스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사는 노인들의 경제적, 신체적,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,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 것임.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【 관 계 법 령 】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조(주민의 자격)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.

### 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